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2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상혁 • 유준병 • 한준호

김주영 • 박희승 • 한민수

이정문 · 정일영 · 김용만

허 영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 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국가경호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경호본부를 두며, 국가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대상자(이하 "경호대상"이라고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 안전을 유지하는 경호 활동을 수행하며, 경호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경호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가경호본부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과 그 가족
 -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 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

(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 과 그 배우자
- 6.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경호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 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

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시기, 구성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장"을 "국가경호본부장 ·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 제3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사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경찰청 국가경호본부장 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청 국가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그 밖의 대통령경호처장의 행위와 대통령경호처장 에 대한 신청,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

를 승계하는 경찰청 국가경호본부장의 행위 또는 경찰청 국가경호 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2(국가경호본부장) ① 경
	찰청에 국가경호본부를 두며,
	국가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
	로 보한다.
	②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대상
	자(이하 "경호대상"이라고 한
	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
	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
	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 안전을 유지하는
	경호 활동을 수행하며, 경호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경호부서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u>.</u>
	③ 국가경호본부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u>1. 대통령과 그 가족</u>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 (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

 首班)과 그 배우자
- 6.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 목 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경호 목적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구역에 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다.

⑥ 국가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 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 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 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경호·안전 대책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경호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 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 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호·안전대책기구의 구성 시기, 구성 및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제17조(하부조직)	1	(생	략)
--	------------	---	----	----

-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 본부장·<u>국장</u>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③ (생 략)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
음)
②
<u>국가경호본부장·국장</u>
<u>.</u>
③ (현행과 같음)